

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HDC퇴직연금종은지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21.01.13.
3. 주요 정정사항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투자위험등급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신탁계약서]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정정 전	정정 후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④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표시한다.</u></p> <p>②<생략></p>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④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발행한다.</u></p> <p>②<현행과 같음></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 발행가액</u>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u>전자등록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u>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u>전자등록의 방법</u>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u>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한국예탁결제원</u>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한국예탁결제원</u>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u>한국예탁결제원</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한국예탁결제원</u>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 ⑧<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전자등록기관</u>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전자등록기관</u>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전자등록기관</u>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 ⑧<현행과 같음></p>
<p>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④<생략></p>	<p>③ ~ ④<현행과 같음></p>
<p>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생략>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생략>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생략> ④<삭제></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제51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제39조와는 별도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금액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 및 제2호의 기간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비용(관련세금 및 분담금, 법률자문료 등)</p> <p>2. 기간 :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p> <p>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③<생략>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생략>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 ⑩<현행과 같음></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현행과 같음>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 ⑩<현행과 같음></p>
<p>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p>	<p>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p>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투자위험등급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현재 갱신	-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p>가. 투자대상</p> <p>1. HDC퇴직연금평생직장증권모투자신탁(채권)</p> <p>⑥ 집합투자증권</p> <p>○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p> <p>2. HDC퇴직연금종은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⑦ 집합투자증권</p> <p>○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p>	<p>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1. HDC퇴직연금평생직장증권모투자신탁(채권)</p> <p>⑥ 집합투자증권</p> <p>○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p> <p>2. HDC퇴직연금종은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⑦ 집합투자증권</p> <p>○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 (연환산)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4.55% 이며, 5등급(낮은위험) 으로 분류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6.70% 이며, 4등급(보통위험) 으로 분류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신 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u>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u>

		<p>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p> <p>②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u>파생상품시장</u>에서 공표하는 <u>가격</u>.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p> <p>⑥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로 평가</p>	<p>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p> <p>②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u>파생상품시장</u>(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u>가격</u>(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p> <p>⑥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u>최종시가</u>)로 평가</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정기갱신</p>	<p>-</p>	<p>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p>
<p>14. 자투자신탁 수익자의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① 세액공제(2015.1.1.부터) <u>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u></p>	<p>① 세액공제 - <u>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u> - <u>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u></p>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 현재 갱신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원에</u> 위탁하여야 하며, <u>한국예탁결제원</u>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전자등록기관</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전자등록기관</u>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 해지		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④ 집합투자업자는 ...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서 생략> 신탁업자는 ...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단서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서 현행과 같음> 신탁업자는 ...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단서 현행과 같음>

[간이투자설명서]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투자위험등급 변경)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위험등급 변경[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 → 4등급)] 및 정기갱신			

<끝>.